



잠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위한 ICMJE 서식

INSTRUCTIONS

이 서식의 목적은 당신의 원고를 읽을 독자가 당신의 연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식은 전자방식으로 작성되고 전자방식으로 저장되게 만들어졌으며,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출판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다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인 정보

성명을 기입하며, 교신저자가 아닐 경우 “아니오”란에 표시하고, 다음 빈칸에 교신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요청받은 원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고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기입한다.

2. 출판(Publication) 전 고려 사항

이 부분은 당신이 출판(publication)을 위해 투고한 연구 정보를 요구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의미하는 기간은 연구 자체 기간 즉, 초기 개념화부터 계획, 현재까지를 의미한다. 요청된 정보는 당신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자원에 대한 것이다.

“아니오”란에 표시하면 제3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당신은 급여를 받은 기관 으로부터 해당업무의 지원을 받으며, 그 기관은 제3자로부터 당신에게 돈을 지불되는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기관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제3자(정부보조금 기관, 자선재단, 영리적 후원자)로부터 기금을 받았다면 “네”란에 표시 한다. 유형과 지급대상(본인, 소속 기관, 아니면 양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3. 투고한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 활동

이 부분은 당신의 일을 작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생의학분야에서 당신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 묻는다. 넓은 의미로 해당 업무와 이 연구 간에 관련 있는 모든 상호 관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투고한 논문이 폐암에서 상피성장인자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길항제와 관련한 실험이라면, 상피성장인자수용체나 폐암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암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추구하는 독립단체와의 관계를 모두 보고해야 한다.

연구 투고 전 36개월 동안의 자신의 수익, 즉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소속 기관에 제공된 모든 수익과 지불 예정인 수익원을 모두 보고한다. 이는 연구지원 단체에서 받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투고된 연구와 관련한 지원을 의미하며 제출된 연구 외의 업무 후원자와의 본인과의 상호관계도 포함시킨다. 만약 의문의 여지가 있으면 관계를 밝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다.

투고한 연구 이외의 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 게재된 연구가 재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단체(예로 제약회사나 재단, 연구 결과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재단)의 지원만 공개 한다. 정부기관, 자선 단체나 학술 단체로 받은 같은 공공 자금 지원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당신 연구에 지원하고 약물을 제약회사에서 제공받은 경우 제약회사만 기재한다.

4. 기타 관계

이 부분은 투고한 연구에서 당신이 기술한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독자들이 인식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이는 다른

관계나 활동에 대하여 보고 하기 위한 영역이다.

Section 1. 개인 식별 정보

1. 이름 (First Name)

2. 성 (Last Name)

3. 유효일 (07-August-2008)

4. 당신이 교신저자입니까

네

아니오

5. 원고 제목

6. 원고 고유번호

Section 2. 출판 전 고려사항

당신 또는 당신 소속 기관은 투고된 연구에 관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서비스(보조금, 데이터모니터링 위원, 연구설계, 원고준비, 통계 분석 등)를 받은 적이 있는가?

출판 전 고려 사항

유형	아니오	본인이 받은 돈	기관이 받은 돈*	단체이름	언급할 내용**
1.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상담료 또는 사례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학회나 다른 목적의 여행의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검토활동 참여보상비(자료감시, 위원회, 통계분석, 결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원고비 또는 원고 검토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원고작성 지원, 약품 장비 또는 행정직인 직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연구에 관하여 당신의 노력에 대해 기관이 받은 돈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이용하시오.

Section 3. 투고된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적 활동

서술된 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관련성(이득의 양과 관계없이)이 있으면 해당되는 네모 칸에 표시하시오.
투고 36개월 전까지의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출판 전 고려 사항

유형	아니오	본인이 받은 돈	기관이 받은 돈*	단체이름	언급할 내용**
1. 이사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자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고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가 증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보조금 / 처리 중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강연자 사무국의 서비스를 포함한 강연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특허권(계획된, 출원중, 발생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로열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개발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주식 / 스톡옵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여행 / 편의시설 / 회의 비용 (위에 표시한 것과 관련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기타 (모든 것 밝히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연구에 관하여 당신의 노력에 대해 기관이 받은 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위에서 자문회사를 언급했다면 자문회사와 관련한 여행에 대해서는 이 줄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4. 기타 관계

당신이 제출한 업무에 대해서 독자가 영향을 받을만 하거나,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관계나 활동이 있는가



ICMJE 이해관계 서식 : 용어설명

- 있음. (다음과 같은 관계/조건/상황 있음, 아래 설명):
- 없음.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만한 다른 관계/조건/상황 없음)

원고가 승인되는 시점에 학술지는 공개된 진실에 대해 확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갱신을 요구할 것이다.
가끔, 학술지는 보고된 관계에 대해 저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다.

- 1.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인간적 관계를 말하며, 이중계약(dual commitments), 경쟁적 이해관계(competing interest), 경쟁적 충성심(competing loyalties)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관계는 무시할 정도의 사소한 것부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관계가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이해관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재정적 관계(예를 들어 고용, 자문, 주식소유, 사례금, 보수가 지급된 전문가 증언 등)는 흔히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이며 학술지나 저자, 과학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은 다른 이유 즉, 인간 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같은 것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공개를 목적으로 “경쟁적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이해관계의 동의어로 여겨도 좋다.
- 2. 저자(Author):** 투고한 원고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하며 내용에 관한 공적 책임을 진다. 상당한 공헌이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연구를 개념화하고 설계, 데이터 수집, 자료 분석(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한 가지만 해당할 수 있음), 2) 원고 초고작성, 원고에 결정적인 수정을 가함(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하거나 하나만 해당할 수 있음), 3) 출판될 최종 원고의 최종 승인이다. 반면 공헌자(contributor)는 위에서 열거한 행위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하였지만 세 가지 모두에 참여한 것이 아닐 때 해당된다. 모든 저자가 참여자이긴 하지만 공헌자가 모두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투고된 원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편집사무국과 주로 접촉하는 역할을 하는 저자로 지정된 공동저자(coauthor designee)이라고 한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편집사무국과 오간 모든 내용을 투고 원고의 다른 공저자와 공유할 책임이 있다. 또한 출판 후 독자와 주된 접촉창구 역할도 한다.
- 4. 출판을 위한 투고(Submitted for publication):** 투고한 원고가 학술지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시점은 투고 학술지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저자가 접수통고를 받는 시점으로 하거나, 어떤 곳은 편집사무실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 5. 연구의 개념화(Conception of research or study):**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될 사고(idea), 논제(thesis), 의문점(question)의 명확한 공식화(formulation).
- 6. 직접자원(Direct resource):** 본인 명의로 얻는 자원,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 7. 간접자원(Indirect resource):** 본인 명목이 아닌 당사자의 소속기관 명의로 얻어지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 8. 기관(Institution):** 대학, 병원, 클리닉 등의 제한된 조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의학 연구센터 등의 조직.
- 9. 재정활동(Financial activity):** 본인의 재정과 관련한 활동을 총칭함.
- 10. 제삼자(Third party):** 두 주요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합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거래/합의에 의해 지분상 이득(재정적, 법적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개체(조직, 정부부서, 공공단체, 회사 등)를 총칭함.

11. **수익원(Source of revenue):** 수입원(revenue stream)과 자금원(source of funding) 둘 다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됨. 연구과제나 연구 자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 후원, 기부금 등임.
12. **연구후원(Sponsoring research):** 사전에 금전제공을 약속하거나 산물, 서비스,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전파하는데(둘 다에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 공헌하는 사람이나 단체(조직, 정부부처, 공공기관, 회사등). 연구과제나 연구 재정, 개시, 운영/관리, 감시 및 연구프로젝트의 보고까지 적절히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함. 스폰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며 항상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된다.
13. **관련 관계(Relevant relationship):**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나 연결.
14. **심사자(Reviewer):** 투고된 원고를 읽고 학술지 출판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사람을 칭하며, 보조금이나 상을 수여할 때도 전문가 심사 과정의 한 부분이다.
15. **보조금(Grants/grant):** 승인된 연구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도록 금전, 재산 또는 두 가지를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 제공하는 제정보조 제도.
16. **자문(Consultancy):** 특정전문분야 안에서 자문가로서 충고하거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업무. 자문위원은 상담에 국한되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7. **이사진(Board membership):** 어떤 조직 내에서 감독권한을 가진 특별 구성 행정팀(이사회; the board)의 선출 위원 또는 임명위원인 상태. 대개 “board”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종 감독위원회, 이사회, 운영총회, 관리위원회, 실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18. **전문가증언(Expert testimony):** 과학, 기술, 전문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증언하는 것. 전문가는 자신의 교육, 수련, 지식, 기술, 사안에 대한 경험/정통함 등으로 인한 전문적으로 발언할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전문가 증언으로서 서비스” 또는 “전문 증언”이라고 한다. 전문가 증언에는 공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서 후 증언하기도 하며, 서면보고서(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반대측 자문가도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특허권(Patent):** 발명가(또는 지정 대리인)가 발명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명시된 기간(통상 20년) 동안 자신의 발명품(제품, 과정,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하는 독점권.
20. **주식(Stocks):** 회사주식, 지분증권, 지분, 주주에게 회사의 지분을 주고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대해 비례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주권. 회사에서 소유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만큼 가진다.
21. **로열티(Royalty):** 재산사용권에 대해 사용개념으로 지불되는 사용료. 특허권, 저작권, 등록상표, 상품명, 등록 디자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불액은 항상 자산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수입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22. **연사국(Speaker's bureau):** 연수교육이나 다른 교육적인 일이나 활동을 하도록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연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는 연사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대화를 좌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회사 가슬라이드나 제시물을 만들 수 있으며 연사는 회사나 상품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행자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